

제257회 거창군의회의 정례회

조 례 안 상 정  
(12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1-49	거창군 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1-50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9
2021-51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5
2021-52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과)	23
2021-53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과)	27
2021-54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민원소통과)	31
2021-5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37
2021-56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47
2021-57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보건소)	51
2021-58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	55
2021-59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61
2021-60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75

##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4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군정조정위원회에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의 성질상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만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군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및 기능 정비함(안 제2조)

- 1) 근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에 설치근거를 둔 자문기구
- 2) 기능정비: 이미 사문화된 내용이나 법령 중복 규정 삭제

나. 서면심의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제6항)

- 1) 사유: 재난 또는 안전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 2) 의결정족수 적용 및 회의 작성 제외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안 제3조·제4조·제7조·제7조의2)

- 1) 인⇒명, 규정에 의하여⇒에 따라, 기타⇒그 밖에

라. 법령 등 중복 규정 삭제(안 제8조·제9조)

- 1) 실비변상: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수당 지급 가능
- 2)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규칙 제정 가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5. 7.~5.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정조정위원회”를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기존 제2조)제1항 중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기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을”을 “제7조를”로 한다.

제8조·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u>	<u>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정조정위원회</u>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u> 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u>거창군정조정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1인</u> 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구성) ① <u>위원회</u>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u>각 1명</u> 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u>	1.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u>
2. <u>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u>	2. <u>정부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u>
3. <u>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	3. <u>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u>
4. <u>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u>	4.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5. <u>주요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것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6. <u>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u>	
7. <u>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u>	
8. 「 <u>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u> 」 제5조에 따른 <u>보안심사위원회</u> 에서 심의할 사항	
9. <u>건당 5백만원 이상 채납자의 결손</u>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관사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인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4. (생략)

5.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기타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⑥ (생략)

**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인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자문단원,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운영)** ① 군정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문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거창군 문화관광, 사회복지, 산업, 지역경제, 건설, 환경녹지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2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임시 단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위원회의 심의 의안과 관련한 의견요청 사항

6. 그 밖에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문단별로 2명 이내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0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법령 중복규정 삭제(현행 제12조~제18조, 제20조)

1)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조건, 통지·방법

2) 지방보조사업자의 결제전용카드, 보조사업자의 신고, 성과평가 등

나. 기존 조례 내용 그대로 존치(안 제1조~제4조)

1)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현행 제1조·제2조)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현행 제11조)

3)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현행 제19조)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5조~제10조)

1) 변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2) 신설: 구성, 위원장의 직무, 서면심사

3) 삭제: 위원 해촉

3) 존치: 회의, 의견청취, 운영세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1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8,400천원 확보

다. 합 의: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5. 17.~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위원회 수당

나. 관련조문: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가. 위원회 수당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8,40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촉위원 자격 기준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 개정사항 반영

##### 1) 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위원 자격 변경(안 제2조)

가) 위원 총수 변경: 5명 ⇒ 7명

나) 위촉위원 확대: 3명 ⇒ 5명

다) 위원 자격 변경: 법관 ⇒ 판사, 검사, 변호사

##### 2) 인용조문 변경(안 제6조)

#### 나. 법령·조례 중복 규정 삭제(안 제3조·제8조)

1) 위원회 기능 및 관할: 「공직자윤리법」 제9조

2) 위원 수당 등: 「거창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제3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안 제2조·제4조·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84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4. 5.~4.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인”을 “명”으로 “5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자”를 “사람”으로 “3인”을 “5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을 “명”으로 각각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재적위원수 계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4. 법 제24조·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조 제목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의 규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u>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3인</li> <li>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인</li> </ol>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u>제3조(기능 및 관할)</u>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li> <li>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li> <li>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li> <li>4.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li> </ol> <p>② 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p>	<p><u>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구성)</u> ① <u>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li> <li>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군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생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 요구

4. 법 제24조·제24조의2, 제25조부터 법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주사로

<p>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한다.</p>	<p>한다.</p>
<p>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 규정</u>으로 정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위원회의 의결</u>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위원회 수당
- 나. 관련조문: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가. 위원회 수당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840천원 확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권 해 도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거창군 외의 지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추가 지급하여 처우개선 및 근무의욕을 북돋우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1) 특수업무수당 외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신설
- 2)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에 따라 목적조항에 위임조문 추가(안 제1조)

다. 직급보조비 추가지급 신설(안 제4조)

- 1) 위임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3호
- 2) 추가 지급액: 월 30만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조의6, 별표 14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40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4. 2.~4. 2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u></p>

# 거창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나. 비용발생 요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세종사무소) 파견 직원에게 직급보조비 추가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540	360	360	360	360	1,980

### 3. 관련 의견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거창군 외의 지역에 파견된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기여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1년 기준)

직급보조비: 540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승욱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국외시찰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삭제(안 제7조제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1. 5. 14.~5. 2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8호  
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u>1.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u></p> <p><u>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u></p> <p><u>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u></p> <p><u>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u></p> <p><u>5.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u></p> <p><u>6. 구내식당 운영 지원</u></p> <p><u>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u></p> <p><u>8.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u></p> <p><u>9.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u>&lt;삭 제&gt;</u></p> <p><u>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u></p> <p><u>2.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u></p> <p><u>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u></p> <p><u>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u></p> <p><u>5. 구내식당 운영 지원</u></p> <p><u>6.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u></p> <p><u>7.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u></p> <p><u>8.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의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제때에 위원회 심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1조의2)

나. 서면 심의·의결 근거 및 적용규정 마련(안 제3조·제5조)

1) 사유: 경미한 내용, 긴급할 때, 천재지변 등

2) 의결정족수 적용, 회의록작성 제외

다. 법령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9조)

1) 위원 수당

2)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개별조례 규정없이 수당지급 가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

나. 예산조치: 위원수당 2021년도 예산 3,5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4. 13.~5. 3.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을 “와 거창군”으로 “운영 등”을 “운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제2조제1항 중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5조제2항 중 “간사”를 “군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u>운영</u>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p> <p>제3조(회의)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u>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u>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1조의2(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u></p> <p>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u>위원회</u>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u></li> <li>2. <u>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u></li> <li>3. <u>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u></li> </ol>

제5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삭제>

# 거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요인: 위원회 수당
- 나. 관련조문: 제3조(회의)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나. 내용: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가. 위원회 수당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 위원회 수당: 2021년도 예산 3,500천원 확보

작성자 민원소통과장 정 현 수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 6. 23.)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임범위에서 조례로 그 사항을 정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 일부 삭제(안 제6조제3항제4호·제5호)
  - 1)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 2)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대부
- 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15조의2제3항)
- 다. 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납부유예 규정 삭제(안 제28조제3항)
  - 1) 영 제14조 및 제32조 납부유예 근거 신설
- 라. 사용료·대부료 5퍼센트 이상 증가분 감액조정 비율 확대(안 제29조)
  - 1) 감액을 100분의 70 ⇒ 100분의 100
- 마.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 확대(안 제30조제4항·제5항)
  - 가)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판매: 100분의 30
  - 나)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용·수익 등: 100분의 50
  - 다)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제한을 받은 경우: 100분의 100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9조·제33조·제34조·제58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6조·제17조·제29조·제32조·제34조·제35조·제5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4. 20.~5.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수는 군”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제19호다목”으로 “경우”란을 “경우 또는 시설”이란”으로 “경우를”을 “경우 또는 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사용료·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 제9항) 중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⑤ 영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나.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5.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나.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다.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제71조제4항 중 “때”를 “경우”로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에서”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한다.

제83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84조 중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현재액”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 제29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제84조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u>군수는 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2조(관리책임)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대부 ④ (생략) ⑤ 삭제&lt; 2019.7.1.&gt; ⑥~⑩ (생략)</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lt;삭제&gt;  &lt;삭제&gt; ④ (현행과 같음) ⑤~⑩ (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p>
<p>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제3항 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생략)</p>	<p>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영 제13조제3항 제8호, 제29조제1항제12호·제19호다목,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또는 시설”이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또는 시설을 말한다.</p>

<신 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27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생략)

②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절차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토석 채취료) 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제29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⑤ 영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0
2.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나.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다.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라.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료 및 사용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2. 대부료 및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3. 대부료 및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⑦·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나.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1)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2)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

3)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

4) 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

3. 영 제35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4.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5.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부료가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100분의 20

나.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00분의 25

다.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100분의 30

⑥·⑦ (현행 제7항·제8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⑦ (생략)

###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생략)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84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 제83조(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제84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라 자원 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신설함(안 제6조제2항·부칙)
- 1) 감면조건: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중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
  - 2) 감면대상: 체육시설, 수송대 썰매장·야영장·오토캠핑장, 공영주차장·군청사 부설주차장,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주차장
  - 3) 감면율: 100분의 50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제11조
  - 2) 「지방자치법」 제136조·제139조·제144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5. 12.~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 제목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자원봉사단체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일 것
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

제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경대상	감경률
15.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②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차(거창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④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각 호 외의 본문을 제1호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2.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별표 4 중 제2호 감면율 100분의 50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대상	감면율
라.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자원봉사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일 것</li> <li>2.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일 것</li> </ol> <p><u>&lt;삭 제&gt;</u></p>

##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21-5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정하는 등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함께 규정함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국민영양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기본방향 및 목표, 세부 추진계획, 행정·재정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련 제도 개선

2) 시행계획 수립 시 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함

3)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특정감사 법령위임 필수조례

다.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을 정함(안 제4조)

라. 업무의 위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안 제5조·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56,566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22.~4.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 거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 및 증진을 위해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자문)**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주민 영양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보충식품구입비(특성에 따른 6가지 패키지)

나. 관련 조문: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사업)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56	56	56	56	56	280

### 3. 관련 의견

거창군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등 식생활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맞춤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지원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55백만원

나. 영양플러스사업 안내 홍보비: 1백만원

작성자: 보건소장 이정현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군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시설사용의 예약, 취소시 반환근거 등을 마련하여 힐링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예약 등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나. 산림휴양관·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별표 3)
- 다. 시설사용료 반환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
- 라.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을 신설함(안 제7조)
- 마. 위탁 운영을 신설함(안 제8조)
- 바.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기준 명확히 함(안 별표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5. 6.~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 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조 제목 “입장료 등 면제”를 “입장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0호의4”를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기존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7조·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 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2. 체험료

구분	기준	요금
산림치유센터	30분	어른: 5,000원 청소년·어린이: 3,000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에 실제 필요한 비용	
	<u>2시간 30분 내외</u>	<u>어른: 10,000원</u> <u>청소년·어린이: 5,000원</u>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5조(입장료 등 면제) ① (생 략)</u>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b>제10호의4</b>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원수행자: 주차장 사용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6조(입장료 등 반환) 다음</u>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사용허가를</p>	<p><u>제3조의2(시설예약 등) ① 힐링랜드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방문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현행과 같음)</u>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b>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b>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원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u>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u>제6조(입장료 등 반환) ① 군수는 다음</u>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거창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취소한 경우. 다만 사용일 그날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반환한다.

<신 설>

② 군수는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신 설>

제7조(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힐링랜드 시설을 개수·보수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장 및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8조(위탁 운영) 군수는 힐링랜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힐링랜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사용료 감면 기준(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영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9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및 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 시 무게 상한 신설(안 제7조제6항)
  - 1)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 2)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 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분리·보관 의무 부과(안 제7조의2)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에 따른 예외 신설(안 제12조의2)
- 라.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안 별표 3)
  - 1) 삭제: 100리터(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
  - 2) 신설: 75리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1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5. 3.~5. 24.
    - 나) 예고결과: 의견 1건(일부 반영),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p>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희봉위생공사 지회(지회장 이영진)</p>	<p>별표 1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배출 및 수 수료 징수 기준에 -안마의자, 어린이 카 시트 추가 -응접세트 삭제 -간판 규격 세분화를 요구함</p>	<p>-반영: 안마의자, 어린 이 카시트 신설, 간판 규격 세분화함. -반영하지 않음: 응 접세트의 경우, 도내 9개 시군이 운영 중 으로 계속 존치</p>	<p style="text-align: center;">일부 반영</p>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각 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으로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로 “kg이상”을 “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별표 2이”를 “별표 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앞의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매소 운영”을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을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제21조 앞의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한다.”를 “않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다.”를 “같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한다.

제26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가전제품류란, 생활용품란, 그 밖의 폐기물란의 마지막 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그 밖의 폐기물의 간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별		규 격	처 리 비
가전 제품류	전기장판	모든 규격	3,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8,000
생활용품	어린이 카시트 (유아보호용 장구)	모든 규격	2,000
그 밖의 폐기물	간판	90×270센티미터 이상	10,000
		60×180센티미터 이상 90×270센티미터 미만	7,000
		60×180센티미터 미만	4,000
		입간판	3,000
	그 밖에 미선별 생활폐기물	10킬로그램 기준	2,000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 비고란 중 “1매당”을 “장당”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100리터 종량제봉투(폴리프로필렌 마대 포함)는 제7조제6항 및 별표 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장 총칙</b></p> <p><b>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b>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 내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b>제5조(적용범위)</b>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u>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의하여</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kg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b>&lt;삭 제&gt;</b></p> <p><b>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b> ①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u>범위에서</u>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u>범위에서</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5조(적용범위)</b>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로</u>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u>따라</u>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p> <p>③ <u>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u>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b>제2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b></p> <p><b>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b>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p>	<p><b>&lt;삭 제&gt;</b></p> <p><b>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b>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p>

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

<신 설>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

제4장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봉투판  
매소 운영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  
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  
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  
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  
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  
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  
아야 한다.

②~③ (생 략)

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  
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가로청소 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  
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명이 1  
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이 비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시급  
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  
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15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사용한다.

1.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장 보칙

<삭 제>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4호 및 제7조 관련)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가. 골판지상자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li> <li>2)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li>3) 비해당 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li> </ol>
2. 골판지 외 종이류	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li> <li>2)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3)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4)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ol>
	다. 신문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2)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ol>
	라.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마.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바. 그 밖의 종이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2) 비해당 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li> </ol>
3.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3)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5)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li>6)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li> <li>7) 비해당 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관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li> </ul>
4. 금속캔	가. 음료·주류캔, 식료품캔(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2)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3)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4)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li> </ul>
	나.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li> <li>2)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li> <li>3)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P.P마대에 담아 배출</li> </ul>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쟁반형 용기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쟁반형 용기류(음료용기, 세정용기 등이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2)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li>3)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4)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li>5)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과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li> </ul>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각종 비닐류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2)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li> <li>3)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li> <li>4)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으로 배출</li> </ol>
8.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가 해당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2)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3)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li> <li>4) 비해당 품목: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P.P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li> </ol>
9. 의류 및 원단류	가. 면의류 나. 그 밖의 의류  가.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나.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다.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라. 그 밖의 합성섬유류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갖춰 둔 헌옷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10.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자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li> <li>2)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li> <li>3) 주요 거점에 갖춰 둔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li> </ol>

11.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14. 가전 제품류	대형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	1)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2)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별표 3]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 가격**(제2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text{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times \text{수수료자립도} + \text{제작비} + \text{판매이익}$$

- 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 나. 수수료자립도는 거창군의 기존 자립도·대행체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될 때의 부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함.
- 다.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라.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2. 종량제봉투 공급·판매 가격

(단위: 원)

용량	공급 가격(장당)	판매 가격(장당)
3리터	45	50
5리터	91	100
10리터	182	200
20리터	364	400
50리터	819	900
<b>75리터</b>	<b>1,228</b>	<b>1,350&lt;신 설&gt;</b>
<b>100리터</b>	<b>1,638</b>	<b>1,800&lt;삭 제&gt;</b>
50리터 (pp)	964	1,060
<b>100리터 (pp)</b>	<b>1,929</b>	<b>2,120&lt;삭 제&gt;</b>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6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천적생태과학관 관람료를 면제하여 그들을 예우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서 위임조례와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주민의 권리제한 등에 해당하는 규제정비(안 제6조제2항, 제10조)
- 다.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함(안 제7조제1항·별표 2)
  - 1)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모두 기재
  - 2)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 라. 법령 중복·재기재 정비(안 제12조~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 가) 예고기간: 2021. 5. 12.~5. 26.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을 “거함대로 3372-60”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일”을 “그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제13조·제14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운영위탁)**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에 둔다.</p> <p>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u>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u>거합대로 3372-60</u>에 둔다.</p> <p>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u>별표 1</u>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u>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한다.</u>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④ <u>그날</u>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p> <p>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군수는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별표 2</u>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현 행	개정안
<p>1. <u>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u>  2. <u>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u>  3. <u>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u>  4. <u>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u>  5.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sup>1</sup>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유족 중 <u>선순위자</u>  7.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에 따른 수급자  8. <u>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u>  9. <u>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u>  10. 그 밖에 <u>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p> <p><u>제10조(관람자의 책임)</u>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p> <p><u>제12조(운영위탁)</u>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p>	<p>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 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u>제12조(운영위탁)</u>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p>

현 행	개정안
<p>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p> <p>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p>	<p>&lt;삭 제&gt;</p>

현 행	개정안
<p>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 제&gt;</p>

[별표 2] <신 설>

관람료 면제기준(제7조제1항관련)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들을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6.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17.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8.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 설립목적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